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066호)

2026. 3.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15.
3. 회 부 일 : 2026.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이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소기간이 짧아 형평성 측면이 결여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2).

Ⅲ. 검토의견

1.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기본 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이고, 보호기간의 연장 한도를 3개월씩 2회에서 6개월 1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피해자등을 <u>6개월</u> 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 4. (생략)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각 3개월</u> 의 범위에서 <u>두 차례 연장할</u> 수 있다.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 -----. 1. ----- <u>1년</u> ----- 2. ~ 4. (현행과 같음) ② ----- ----- ----- ----- <u>6개월</u> ----- ----- <u>연장할</u> -----.

현행법 제7조의2¹⁾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

함)의 종류를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3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 최대 1년),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및 장애인보호시설은 최대 2년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에게 즉각적인 물리적 안전을 제공하고, 그들이 심신의 피해를 치유하고 안정을 되찾아 이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그런데, 현재 내국인 보호시설 63개소 중 57개소(90.5%)가 단기보호시설로 입소기간이 최대 12개월임. 현실적으로 1년 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능력을 갖추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는 장기보호시설(외국인·장애인 제외)은 전국 4곳(서울, 부산, 광주, 경기)에 불과함.

이에 개정안은 단기보호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연장시 최대 입소기간 1년 → 1년 6개월)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충분히 머물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입소기간을 연장하면 단기보호시설의 최대 입소기간

호하는 시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1년 6개월(1년 + 6개월 연장 가능)로 장기보호시설(2년)과의 입소 기간 차이가 6개월에 불과하여 단기보호시설과 장기보호시설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현재 장기보호시설이 4개소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하거나 동반 자녀의 학기 중에 입소기간이 만료되는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1년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성폭력피해자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시설의 경우 일반시설에서는 장·단기 구별을 두지 않고 최대 2년 6개월까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그룹홈)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하고 있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일반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 경우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류 및 입소기간 비교 >

구분	시설 종류	기본 입소기간	최대 입소기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6개월	1년 (6개월+3년 2회)
	장기보호시설	2년	2년 (연장 없음)
	외국인보호시설	2년	2년 (연장 없음)
	장애인보호시설	2년	2년 (연장 없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²⁾	일반보호시설	1년	2년 6개월(1년 + 1년 6개월) *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장애인보호시설	2년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가능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 될 때	25세가 될 때까지 (19세+ 6년 연장)
	외국인보호시설	1년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가능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4년(2년 + 2년) *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 생활시설	2년	4년(2년 + 2년) *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³⁾	일반지원시설	1년	2년 6개월 (1년 + 1년 6개월)
	청소년지원시설	19세 될 때	21세 될 때 (19세+ 2년 연장)
	외국인지원시설	3개월	3개월 (연장 없음)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4년 (2년 + 2년)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또한, 개정안 제7조의2제2항은 현재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2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있는데,

현행 3개월 단위의 연장 심사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거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73호, 2025.12.30. 개정, 2026. 7. 1. 시행)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②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개별 상황을 고려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단기보호시설 입소자 중 자립준비나 소송 진행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퇴소 시 동반 자녀의 학기 중 전학에 대한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1년 이상 보호가 요구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점, 3개월 단위 잦은 연장 심사로 인한 불안정성 초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을 1년으로 늘이고 입소기간 연장 기한을 6개월 범위로 늘이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임.

또한,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이면서, 이를 현행과 같이 두 차례 연장(총 보호기간 1년 6개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644

[참고자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관련 통계

1. 보호시설 설치현황

(’26년 1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63	12	2	3	1	4	1	1	11	5	3	3	4	4	1	6	2
일반시설	36	8	1	2	1	1	-	1	10	4	1	-	2	2	1	2	-
가족보호 시설	27	4	1	1	-	3	1	-	1	1	2	3	2	2	-	4	2

※ 장애인시설(2), 중장기시설(4)

1-1. 보호시설 설치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현재
계(단위 : 개소)	98	99	98	96	96
단기	59	59	59	57	57
장기	4	4	4	4	4
장애인	2	3	2	2	2
이주여성	33	33	33	33	33

2. 입·퇴소 현황

(단위 : 명)

연 도	연중 입소인원			연중 퇴소인원			연말 현원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2022	1,559	1,013	546	1,598	1,022	576	573	361	212
2023	1,733	1,226	507	1,694	1,191	503	574	336	208
2024	1,491	1,030	461	1,511	1,041	470	554	355	199

3. 보호기간

(단위 : 명, %)

연도	계 비율	3일 이하	4일 - 7일	8일 - 1월 이하	1월초과 - 2월이하	2월초과 - 3월이하	3월초과 - 4월이하	4월초과 - 5월이하	5월초과 - 6월이하	6월초과 - 9월이하	9월초과 - 2년이하
2022	1,598	181	178	331	189	100	72	81	66	185	215
	100.0	11.3	11.1	20.7	11.8	6.3	4.5	5.1	4.1	11.6	13.5
2023	1,694	235	175	364	172	117	96	52	76	176	231
	100.0	13.9	10.3	21.5	10.2	6.9	5.7	3.1	4.5	10.4	13.6
2024	1,511	184	149	289	168	96	69	65	66	137	288
	100.0	12.2	9.9	19.1	11.1	6.4	4.6	4.3	4.4	9.1	19.1

※ 1년 초과 입소는 장기보호시설 (6개, 장애인시설 2개 포함)에서만 가능하며, '24년 기준 1년 이상 보호인원은 42명임 (2%)